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7. 6 선고 2022가단26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4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건희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.
2.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공금을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9월 24일경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 75,000,000원을 횡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.
3.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도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5,000,000원의 지급을 수차례 걸쳐 독촉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현재는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